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982
등록일자	2016.1.8.
결재일자	2016.1.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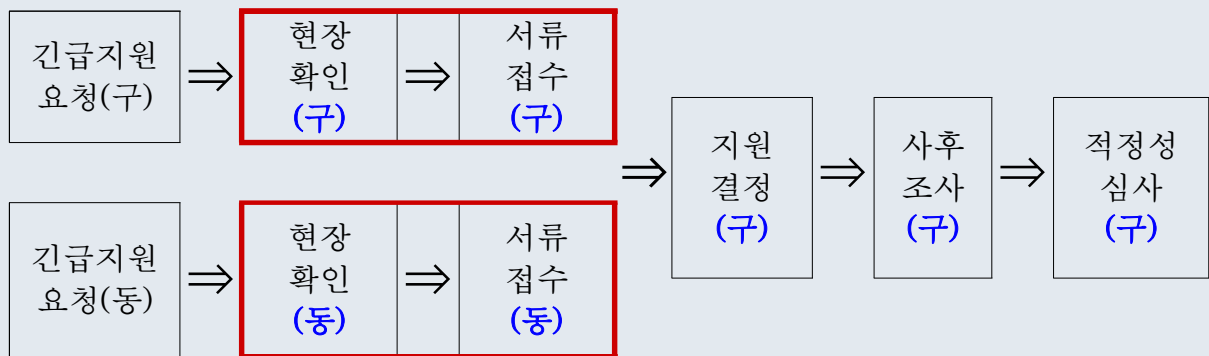
주무관	희망복지지원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	
진성용	옥미정	김구연	01/08 김효길		
협조자					

-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-

## 201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계획

- 사업명 : 『긴급복지지원사업』
- 추진기간 : 2016년 1월 ~ 12월(연중)
- 지원대상 :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빈곤층 전략 위험에 처한 가정 중 소득·재산 등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가구

### ■ 지원절차



### ■ 지원내용

- 의료비,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, 기타지원

2016. 1. .

강 남 구  
(복 지 정 책 과)

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긴급복지지원법, 시행령, 시행규칙</p> <p>※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(맨 뒷장) 첨부</p>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· 추진경위 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 보호</p>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</p>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</p>
분야 별 검토사항  [계속 : 0 ] [신규 :   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p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  )</p> <p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0 )</p> <p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  )</p> <p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  )</p> <p>⑤ 시장조사 ----- (   )</p> <p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  )</p> <p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  )</p> <p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  )</p> <p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  )</p> <p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
타 기관 사 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.</p>
전문가 자 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· 해당사항 없음.</p>

-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-

# 201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계획

세모녀 자살사건, 세월호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## 1 지원근거

- 긴급복지지원법

## 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1 ~ 2016. 12(연중)
-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
- 지원대상
  -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
  - 소득기준

(단위 / 원)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중위소득 75%이하	1,218,623	2,074,953	2,684,264	3,293,576	3,902,888	4,512,199	5,121,511
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 마다 609,312원씩 증가(8인가구 5,730,823원)

- 일반재산기준(대도시) : 13,5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5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- 사업예산 : 608,884천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-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, 저소득주민지원, 긴급복지지원, 일반보상금, 사회보장적수혜금

### 3

## 세부추진방법

### □ 위기상황이란?

○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 ~ 제6항

- ①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②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(의료지원, 생계지원)
-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·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④ 가정폭력 및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⑤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(2016.2월 중 조례제정 예정)
-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⇒ 이혼, 단전, 휴·폐업, 실직, 교정시설 출소, 노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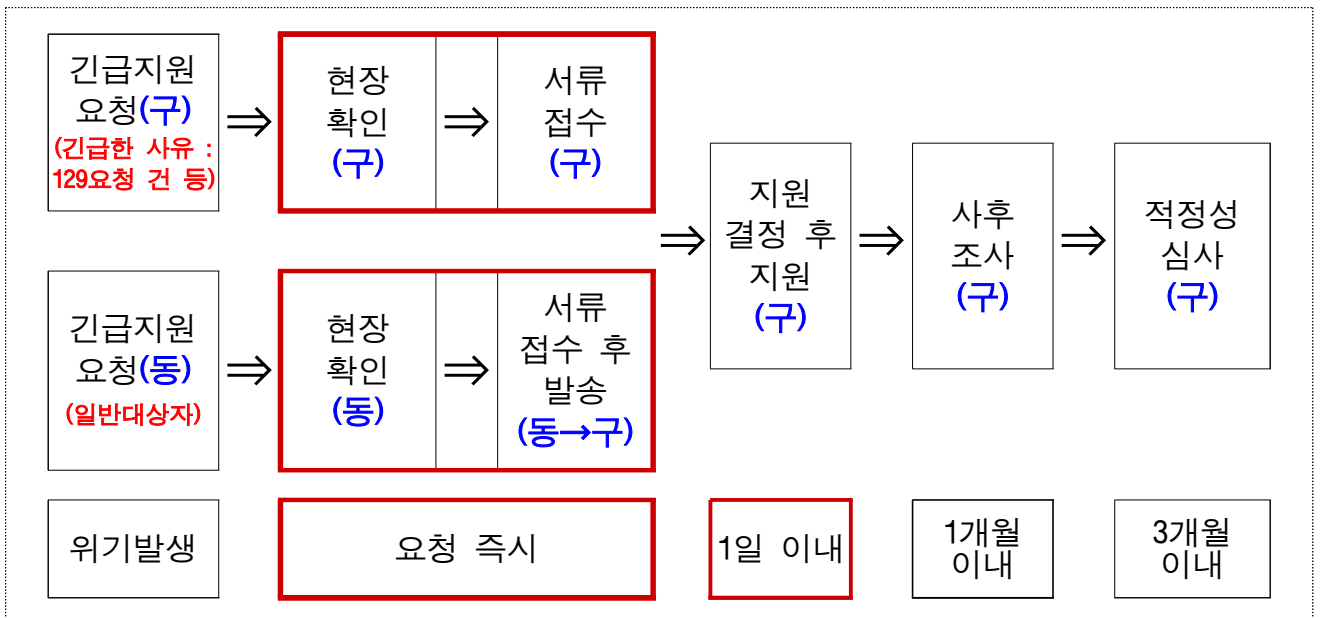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방법 : 원칙적으로 3개월 지원(의료지원은 1회), 필요시 연장지원

### □ 지원절차

○ 동주민센터에서 신청·접수 및 현장확인 후 구청으로 지원 요청

○ 선(先)지원 후 후(後)처리원칙

· 지원요청(동, 구) ⇒ 현장확인 ⇒ 지원 ⇒ 사후조사 ⇒ 적정성심사



○ 사후조사 : 소득·재산(금융재산 포함) 조사 ⇒ 1개월 이내

○ 적정성 심사 : 강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적정/부적정 심의 ⇒ 3개월 이내

## 4

## 지원내용

종 류		지 원 내 용					지 원 금 액 (단위:원)		최장 횟수
금전 · 현물 지원	생계지원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6회	
		418,400	712,500	921,800	1,131,000	1,340,300	1,549,500		
	의료지원	○ 각종 검사, 수술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) ※ 퇴원 전까지 신청(입원전 신청이 원칙)				300만원 이내			2회
	주거지원	○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 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 급하거나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후 관련 서류 첨부				1~2인	3~4인	5~6인	12회
						374,200	621,700	820,100	
	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	○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				1,401,700(4인가족)			6회
	교육지원 (부가급여)	○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업료, 입학금, 학교운영지원비, 학용품비 등 지원				초 : 214,200, 중 : 340,900 고 : 417,700 및 수업료·입학금			4회
그밖의지원 (부가급여)	○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- 동절기(10~3월) 연료비 : 92,800원 - 해산비 : 60만원 - 전기요금 : 50만원 ※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(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 - 장제비 : 75만원							1회 (연료비 6회)	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○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연계 ○ 상담 등 기타 지원							횟수제한 없음	

※ 위기상황에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

※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

## 5

## 기대효과

-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을 신속히 구호하여 사회복지안정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
<b>현 장 확 인 서</b>							처리기간	
							지체 없이	
지원요청 또는 신고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대상자와의 관계			
	주 소	(전화 : _____ )						
위기발생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제1호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·방임·학대 <input type="checkbox"/> 제4호 가구원의 가정폭력·성폭력 <input type="checkbox"/> 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단전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이혼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휴폐업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실업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출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노숙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조례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기타)							
긴급지원 대상자	가구주와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	건강상태 (장애·질병)	직업	월소득	비고
재 산 사 항	건축물/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( _____ 원)						
	토 지	<input type="checkbox"/> 논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밭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야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_____ 원)						
	선 박	<input type="checkbox"/> 선박 대 ( _____ 원)						
	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액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종·연식( _____ ) 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번호( _____ 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유자( _____ ) <input type="checkbox"/> 배기량( _____ cc)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(생업용, 장애인용, 자가용, 보장기관인정차량)						
	임차보증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전·월세보증금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_____ 원)						
	금융재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예금·적금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성·보장성보험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·수표·어음등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( _____ 원)						
	동 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소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돼지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가축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원권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종묘·임목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·기구류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_____ 원)						
	부 채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보증금(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부채( _____ 원)						
유의사항	<p>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회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,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긴급지원대상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</p>							

<b>현장확인 내 용</b>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생계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주거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(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료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요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산비)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타지원연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수급자 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소(암, 희귀난치성질환 등) 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한적십자사 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지원          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자체(시도)자체 지원사업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          </div> </div>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불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위기상황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기준 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총재산기준 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재산기준 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사유로 기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타지원 연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
<b>지원계좌</b>	금융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
<b>구비서류</b>	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					
<p>위와 같이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 월 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긴급지원담당공무원 : _____ (서명 또는 인)</p>						

###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

긴급지원 대상자	가 구 주			주민등록번호			
	주 소	(전화번호)					
	위기발생 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및 다른 소득원 부재 <input type="checkbox"/> 중한 질병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·방임·학대 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       )					
	지원종류			지 원 내 용			
	긴급지원 기 간	년    월		일부터	년    월		일까지
	가구주 와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 번 호	동 거 여 부 및 미동거사유	건강상태 (장애, 질병)	직 업	월 소 득
	본 인						
	재 산 사 항	건축물/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(        원)				
토 지		<input type="checkbox"/> 논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밭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야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 원)					
선 박		<input type="checkbox"/> 선박        대 (        원)					
자 동 차		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액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종·연식( 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번호( 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유자( 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배기량(        cc)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(생업용, 장애인용, 자가용, 보장기관인정차량)					
임차보증금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·월세보증금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 원)					
금융재산	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예금·적금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성보험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·수표·어음등(        원)					
동 산		<input type="checkbox"/> 소(        원)		<input type="checkbox"/> 돼지(        원)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가축(        원)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종묘·임목(        원)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·기구류(        원)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 원)	
부 채	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보증금( 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부채(        원)						



긴급지원 적정성 판단자료	소득	※ 판단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 단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
	재산	※ 판단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액의 2.5배 이하
	금융재산	※ 판단기준 : 300만원 이하
사후조사 결과	지원연장 및 중지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연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중지
	담당자 의견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에 의거 위와같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%;">201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%;">조사자 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%;">확인자 직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b>시·군·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귀하</b></p>		